

국무조정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

국무조정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을 공개모집 하오니
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1년 8월 6일
국무조정실장

1. 선발예정인원 (1개 직위, 총 1명)

채용분야	직급	인원	채용기간	근무예정부서
제도·정책 연구	전문임기제 가급 (4급상당)	1명	임용일 ~ '22.5.	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(서울특별시)

※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,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법령(공무원임용령 등)에 따라
근무기간 연장 가능

※ 근무지는 행정수도 이전정책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근무기간 중 변경될 수 있음

2. 주요직무내용

채용분야	담당업무
제도·정책 연구 (가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총괄○ 탄소중립 이행 피해계층 지원 정책 총괄○ 기타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및 공정전환에 관한 사항

3. 근거법령

- 국가공무원법(법률 제18237호, 2021. 6. 8.)
- 공무원임용령(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)
- 공무원임용시험령(대통령령 제31614호, 2021. 4. 6.)
- 공무원임용규칙(인사혁신처예규 제101호, 2020. 9. 22.)
-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(인사혁신처예규 제105호, 2020. 10. 21.)
-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31669호, 2021. 5. 4.)

4. 채용자격요건 (기준 :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)

① 공통요건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,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【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】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【「국가공무원법」 부칙 제2조(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)】

제33조제6호의3·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·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【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(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)】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6.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7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- 응시연령 : 20세 이상(2001. 12. 31. 이전 출생한 자)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)

② 응시요건 : **[별지 1호] 직무기술서(응시자격요건) 참조**

< 참 고 >

○ **공 통**

-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**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**하며,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**반드시 택일하여 응시**해야함
-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**최종(면접) 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**
-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**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**
-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
-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

○ **경 력**

- '경력'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,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해 인정
 - * 경력증명서에 **근무기간(연월일)·상근여부·담당업무가 반드시 명시**되어 있어야 하며, 해당 내용이 누락되는 등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
-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,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
 - *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
- 근무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(예: 근로계약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로 보완 가능하며, 이 때 검증을 위해 '폐업사실증명서', '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', '소득금액증명서' 제출 필요
- '**전문임기제 가급**'으로 응시하는 경우 응시자격요건상 택일 기준과 별도로,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른 **단체의 장** 또는 아래의 기준을 **모두 충족**하는 **부서단위 책임자*** 근무 경력 필요
 - * **부서단위의 책임자**란 ① (조직체계)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(팀장, 부장, 책임연구원 등) ② (업무권한) 부서장으로서 인사권(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)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③ (근무형태)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
 - ※ ①~③의 요건을 **모두 증빙**할 수 있어야 하며, **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서(임시조직, TF 등)는 불인정** 및 **부서 직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**(위탁업체 직원, 인턴, 임시직 제외)

○ **학 위**

- '관련분야 학위'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

○ 연구실적

- '연구실적'은 관련분야 논문, 저서 수에 비례하여 차등 배점 (학위논문 제외)
SCI, SCIE, 학술진흥재단 등재 논문 또는 관련분야에 부합하는 저서에 한해 인정
- 실적 제출시 반드시 요약본을 첨부 (1페이지)

5. 보수수준

○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

- 규정상 연봉한계액의 범위(전문임기제 가급의 경우 하한액의 150% 범위)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업무능력·자격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
※ 전문임기제 가급의 경우 임용예정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한액의 150%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음

채용직급	연봉 상한액	연봉 하한액
전문임기제 가급	상한액 없음	61,684천원

6. 시험방법

① 1차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공고된 채용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 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아래 서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로 결정
- ※ 서류심사 기준 : 자기소개서·직무수행계획서, 관련분야 근무경력·연구·수상실적 등

② 2차시험 : 면접시험

※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
- ※ (평정요소)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·품행·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
- ※ (최종합격자 결정)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"하"로 평정 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"하"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, "상"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

7. 시험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모집공고	'21.8.6(금)~'21.8.17(화)	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, 국무조정실.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
원서접수	'21.8.13(금)~'21.8.17(화)	■ 국무조정실 인사과 채용담당자(우편, 방문)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1.8.31(화) 예정	■ 국무조정실.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
면접심사	'21.9.10(금) 예정	■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고
최종합격자 발표	'21.9.17(금) 예정	■ 국무조정실.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우리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일정 변경 및 합격자 발표 등은 기관 홈페이지(<http://www.opm.go.kr>)의 알림마당-공지사항에 게시

8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'21. 8. 13(금) ~ '21. 8. 17(화), 09:00 ~ 18:00
 - ※ 마감일 18: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
-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
 - ※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**09:00 ~ 18:00(12:00 ~ 13:00 제외)** 내에만 가능하나, **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을 고려하여 방문접수 지양**
 - 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, **봉투 겉면에 "응시분야 및 직급" 기재**
 - ※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- 접 수 처 : 국무조정실 인사과
 - (주 소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313호
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인사과 채용담당자
 - (우편번호) 30107
- 응 시 표 :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배부

9. 제출서류 (※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)

< 공통사항 : 필수 제출 >

- ① 응시원서 1부 <별지 2호 서식>
 - ※ 정부수입인지(전문임기제 가·나급 : 10,000원) 첨부,
 - ※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
- ② 이력서 1부 <별지 3호 서식>
 - ※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되,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됨을 유의
- ③ 자기소개서 1부 <별지 4호 서식>
 - ※ A4 2매 내외로 작성(형식·구성은 자유)
-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<별지 5호 서식>
 - ※ A4 5매 내외, '요약서'는 A4 1매로 작성
-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<별지 6호 서식>
- ⑥ 개인정보제공(이용) 동의서 <별지 7호 서식>

< 개별사항 : 해당자만 제출 >

-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<별지 8호 서식>
 - ※ **재직기간(연월일), 인사 변동사항, 직위, 담당업무, 상근여부** 등 등 반드시 기재
 - 비상근 근무시 **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** (예: 주당 30시간)
 - **담당업무 미기재시 관련분야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**
 - ※ **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**(하단에 별도 기재 가능)
 - ※ 재직증명서 제출시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('21.7.22.) 기준
- ②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
 - ※ 학위·연구논문은 A4 1매 이내의 별도 논문요약서 첨부 <별지 9호 서식>
 - ※ 논문의 표지·목차, 서론 사본 각 1부(논문명, 지도교수명, 학위자명 등 명시)
 - ※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등 "학력증명서"의 경우 전형위원 제척·기피,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,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
- ③ 직무분야 관련 연구실적/저서 증빙자료 및 요약서 사본 1부
 - ※ 저서 표지, 제목, 집필자가 표시된 부분 사본 첨부 <별지 10호 서식>

④ 직무분야 관련 수상(표창 등) 증빙자료 사본 1부

※ 정부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수여받은 수상(표창 등)

⑤ 주민등록 초본 1부 (남자만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)

10. 유의사항
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(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·학위·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)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,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◁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▷

인사혁신처 홈페이지(www.mpm.go.kr) - 참여민원 - 신고센터 - 인사신문고 -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

- 제출서류 미비,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,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청구서(별지서식 11호)를 작성하여 이메일 (yem8512@korea.kr)로 제출하시면 원본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.
※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: '21. 9. 23(목)~'21. 9. 30(목)
- 응시인원이 없거나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업무를 수행할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, 공무원채용신체검사,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동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,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,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- 서류심사 합격자의 경우 4대 보험(고용보험·국민연금·건강보험·산재보험)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 내역,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통해 경력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문의 사항은 국무조정실 인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※ 채용 담당자 : 044-200-2791)